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특수절도·특수절도미수·절도

[수원지방법원 2008. 7. 16. 2008고합45,64(병합),73(병합),117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봉창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준영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4년에, 피고인 2, 3, 4를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4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, 18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, 177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, 173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